



의정활동보고서



제258회 임시회(2012. 10. 4 ~ 10. 18)



경 상 북 도 의 회

개 회 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 해보다 유난히 무더웠던 지난 여름과 연이은 태풍으로
우리 지역에도 많은 피해가 발생되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모두가 합심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보내고 오늘부터
보름간 일정으로 제258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단위 각종 문화·체육행사 등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수해복구작업과 민생현장 방문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12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우리 도가 2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격려와 축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한해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 모두가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올 한 해 동안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지난 1년간의 도정을 거울삼아 도의회와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더욱 성실한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이번 회기에서는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그 어느 때 보다 활발하고 생산적으로 운영되어 도민에게 희망과 신뢰를 심어주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0월 4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宋 必 珪

차 례

I. 개 황	169
II. 의사일정	172
III. 의안처리	178
IV. 민원처리	180
V. 본회의 보고사항	182
VI. 5분 자유발언	202
□ 김봉교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구미)	202
□ 정영길 의원(농수산위원회 / 성주)	207
□ 강영석 의원(농수산위원회 / 상주)	211
□ 황이주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울진)	215

—
부 록
—

<input type="checkbox"/> 조례안(6건)	221
<input type="checkbox"/> 결의안(2건)	259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258회 임시회는 2012년 10월 4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최하여 10월 18일까지 15일간의 회기 동안 3차의 본회의와 7회의 상임위원회, 5회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제1차 본회의는 10월 4일(목)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제2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등 3가지 안건을 의결하였다.

뒤이어 이어진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이상용 의원은 “남북6축 조기건설, 일자리 효율화 방안, 문화바우처 사업, 기숙사 이용실태”와 관련한 질문을 하였으며, 문화환경위원회 서정숙 의원은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및 항공산업 육성, 도와 도교육청간의 중복예산”과 관련하여 도정 질문을 하였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5일(금)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농수산위원회 나기보 의원이 “혁신도시 관련, 태풍 수해대책, 대안학교 활성화 방안, 자연휴양림 활성화 방안, 공공도서관 확충, 무상급식”과 관련한 질문을 하였으며, 건설소방위원회 이왕식 의원은 “도 집행부(정무부지사) 역할 관련, 도청이전 이주민 보상 관련, 도내 박물관 건립, 감염성 질환(결핵)과 보건교사 확충” 등에

관한 질문을 하였으며, 교육위원회 구자근 의원은 “지방행정체제 개편, 도심지 보건지소 확충” 등 경북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폭넓은 질문을 하였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8일(목)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기획경제위원회의 김봉교 의원의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대책관련”, 농수산위원회의 정영길 의원의 “수해지역 피해지원 관련”, 농수산위원회의 강영석 의원의 “땅을 잃을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도민의 마음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황이주 의원의 “원전주변지역 질병 역학조사”에 관한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안전심사에 있어서는 6건의 조례안과 2건의 결의안 및 1건의 승인안, 2건의 동의안, 12건의 기타안 등 총 23건을 의결하였다.

조례안중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설립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원안 가결이 있었고, “경상북도 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으며, 또한 승인안, 동의안, 기타안 등 17건은 모두 원안 가결하였다.

또한 5개 특별위원회와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결과, 서민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황이주 의원(울진), 부위원장 김봉교 의원(구미),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장경식 의원(포항), 부위원장 이용진 의원(울릉),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상용 의원(영양), 부위원장 이영식 의원

(안동), 경북·대구 상생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영기 의원(청송), 부위원장 홍진규 의원(군위),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권영만 의원(봉화), 부위원장 나기보 의원(김천),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에 장세헌 의원(포항), 부위원장 김창숙 의원(비례)이 각각 선임되었다.

한편 본회의에 앞서 이루어진 상임위원회에서는 “경상북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조례안”이 농수산위원회에서 상정유보되었다. 이밖에 회기 중에는 각 상임위별로 업무보고 및 현장방문을 통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경북버스운송사업조합을 방문하여 업무현황을 청취하고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으며,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김천에서 열린 제5회 경북식품박람회 참관을 하고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청도와 구미를 방문하여 관광자원화 사업의 추진현황 실태점검과 구미 불산 누출사고 이주 주민을 위로하였다.

또한 농수산위원회에서는 태풍 “산바” 피해 및 복구현황, 대책 등을 마련하는 간담회를 가졌으며, 교육위원회는 경상북도 영덕교육지원청사 개청식과 제14회 경상북도 학생축제를 참관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II. 의사일정

1. 소 집

가. 집회구분 : 임시회

나. 소집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다. 집회일시 : 2012년 10월 4일(목) 14:00

2. 회 기

가. 회의기간 : 2012년 10월 4일 ~ 10월 18일(15일간)

나. 개의횟수

○ 본회의 : 3회(누계 52회)

○ 위원회

구분	계	의회 운영	기획 경제	행 정 보건복지	문화 환경	농수 산	건설 소방	교육	특 위	
									예결	기타
금회	12	1	1	1	1	1	1	1		5
누계	298	24	39	40	33	28	37	31	34	32

※ 누계는 제9대 의회 개의횟수

3. 활 동

가. 본회의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10. 4(목) 14:00 (제1차)	<input type="checkbox"/> 개회식 <input type="checkbox"/> 안전처리 ○ 제25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휴회의 건 <input type="checkbox"/>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이상용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영양) ○ 서정숙 의원(문화환경위원회, 비례)	
10. 5(금) 11:00 (제2차)	<input type="checkbox"/>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나기보 의원(농수산위원회, 김천) ○ 이왕식 의원(건설소방위원회, 의성) ○ 구자근 의원(교육위원회, 구미)	
10. 18(목) 11:00 (제3차)	<input type="checkbox"/> 5분 자유발언 ○ 김봉교 의원(기획경제위원회, 구미) ○ 정영길 의원(농수산위원회, 성주) ○ 강영석 의원(농수산위원회, 상주) ○ 황이주 의원(행정보건위원회, 울진)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p>10. 18(목) 11:00 (제3차)</p>	<p>□ 안전처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 경북·대구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설립 및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경로당운영 및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북도립대학 교명 변경 동의안 ○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 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변경선임의 건 ○ 서민경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도청이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경북·대구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서민경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 ○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 ○ 도청이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 ○ 경북·대구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 ○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 ○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 	

나.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10. 15(월) 11:00 (제1차)	<input type="checkbox"/> 안전심사 ○ '12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수립의 건 ○ '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 제259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 ○ 경북·대구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건 ○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건	

<기획경제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10. 8(월) 10:30 (제1차)	<input type="checkbox"/> 안전심사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2012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input type="checkbox"/> 현지 확인 ○ 경북버스운송사업조합 현지 확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10. 12(금) 10:00 (제1차)	<input type="checkbox"/> 안전심사 ○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설립 및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북도립대학 교명 변경 동의(안) ○ '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input type="checkbox"/> 현지방문 ○ 제5회 경북식품박람회 참관	

<문화환경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0. 8(월) 10:30 (제1차)	<input type="checkbox"/> 안전심사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의 건 <input type="checkbox"/> 현안사항 보고 ○ 경북관광개발공사 인수 추진상황 보고	
10. 17(수)	<input type="checkbox"/> 현지 확인 ○ 주요 당면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 (청도)	

<농수산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0. 9(화) 11:00 (제1차)	<input type="checkbox"/> 한농연 도연합회 임원 간담회 <input type="checkbox"/> 안전심사 ○ 조례안 심사 -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 학교무상급식조례(안)에 대한 업무보고 ○ '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건설소방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10. 5(금) 본회의 종료 후 (제1차)	<input type="checkbox"/> 안전심사 ○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교육위원회>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10. 9(화)	<input type="checkbox"/> 현지 확인 ○ 경상북도영덕교육지원청사 개정식(11:00) ○ 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 개원식(14:00)	
10. 10(수) 10:30 (제1차)	<input type="checkbox"/> 안건처리 ○ 경상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input type="checkbox"/>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의 건	

<특별위원회>

위 원 회	일 시	장 소	활 동 내 용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10. 18(목)	문화환경위 회의실	<input type="checkbox"/> 독도수호특별위원회 회의 ○ 위원장 선거 ○ 부위원장 선거
서민경제 특별위원회	10. 18(목)	기획경제위 회의실	<input type="checkbox"/> 서민경제특별위원회 회의 ○ 위원장 선거 ○ 부위원장 선거
도청이전지원 특별위원회	10. 18(목)	건설소방위 회의실	<input type="checkbox"/>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회의 ○ 위원장 선거 ○ 부위원장 선거
경북·대구 발전상생 특별위원회	10. 18(목)	농수산위 회의실	<input type="checkbox"/> 경북·대구발전상생특별위원회 회의 ○ 위원장 선거 ○ 부위원장 선거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	10. 18(목)	교육위 회의실	<input type="checkbox"/>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회의 ○ 위원장 선거 ○ 부위원장 선거

Ⅲ. 의안처리

구 분	접수 (부의)	심의·의결					철회	계류	비고
		계	가 결		부 결	폐 안			
			원 안	수 정					
계	19 (330)	18 (323)	17 (253)	1 (64)	(4)	(2)	(3)	1 (4)	
조 례 안	소 계	7 (185)	6 (178)	5 (125)	1 (47)	(4)	(2)	(3)	1 (4)
	의회 제안	5 (72)	5 (68)	4 (51)	1 (17)			(2)	(2)
	도지사 제출	1 (79)	(76)	(52)	(21)	(1)	(2)	(1)	1 (2)
	교육감 제출	1 (34)	1 (34)	1 (22)	(9)	(3)			
규 칙 안	(2)	(2)	(2)						
예산·결산	(17)	(17)	(6)	(11)					
동의·승인	3 (27)	3 (27)	3 (24)	(3)					
건의안	(3)	(3)	(3)						
결의안	2 (34)	2 (34)	2 (31)	(3)					
기 타 안	7 (62)	7 (62)	7 (62)						

※ ()내는 제9대 의회 누계임.

□ 상임위 계류 중인 안건(4건)

- 경상북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지원 조례안
(’11. 4. 22, 도지사, 농수산위원회 상정유보)
- 경상북도 비정규학교(야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7. 7, 이달의원, ’11. 8. 31,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유보)
- 경상북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8. 16 이영식 의원, 문화환경위원회 심사유보)
- 경상북도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조례안
(’12. 8. 31 도지사, 농수산위원회 심사유보)

IV. 민원처리

1. 청 원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 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1		1		1
누 계	4		4	3	1

※ 누계는 제9대 의회 실적

2. 진 정

가. 접 수

위원회	계	행 정	사 회 문 화	교 통	건 설	교 육	경 제	환 경	농 어 업	기 타
계	9 (72)	2 (10)	1 (13)	2 (12)	3 (23)				1 (2)	
의 회 영 기 회										
경 제 기 획	1	1								
행 정 장 보 건 복 지	2	1								
문 화 회 환			1							
농 수 산	1								1	
건 설 소 방	5			2	3					
교 육										
특 별 위 원 회										

※ ()내는 제9대 의회 실적

나. 처 리

위 원 회	처 리					처 리 중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 이 송	
계	9 (72)	3 (66)				6
의회운영						
기획경제	1					1
행 정 보건복지	2					2
문화환경						
농 수 산	1					1
건설소방	5	3				2
교 육						
특별위원회						

※ ()내는 제9대 의회 실적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 접수사항 : 9건(조례안 7, 동의안 2)

제출·발의자 (제출일)	의안명	소관위원회 (회부일)
김명호 의원 등 2명 (2012. 9. 21)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설립 및 지원 조례안	행정보건복지 (2012. 9. 26)
한혜련 의원 (2012. 9. 24)	경상북도 경로당운영 및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지사 (2012. 9. 21)	경북도립대학 교명 변경 동의안	"
경상북도지사 (2012. 9. 24)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박병훈 의원 (2012. 9. 20)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농수산 (2012. 9. 26)
경상북도지사 (2012. 8. 31)	경상북도친환경 무상급식학교 급식 지원 조례안	" (2012. 8. 31)
김희원 의원 등 13명 (2012. 9. 21)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소방 (2012. 9. 26)
김영기 의원 등 4명 (2012. 9. 21)	경상북도 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교육 (2012. 9. 26)
경상북도교육감 (2012. 9. 24)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조례공포 사항 : 11건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공 포 일
2012. 9. 10	경상북도 지사	경상북도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조례	2012. 9. 27 (제3363호)
"	"	경상북도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제3364호)
"	"	경상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 (제3365호)
"	"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제3366호)
"	"	경상북도 대한노인회 경상북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 (제3367호)
"	"	경상북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 (제3368호)
"	"	경상북도 어항정책심의위원회 조례 폐지조례	" (제3369호)
"	"	경상북도 어항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	" (제3370호)
"	"	경상북도 건축기본조례	" (제3371호)
"	"	경상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3372호)
"	"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373호)

3. 기타 의정활동 사항

- 제9회 경상북도지사배 미용경기 대회 참석
 - 일 시 : 2012. 9. 11(화) 11:00
 - 장 소 : 포항 실내체육관
 - 참 석 : 채옥주 위원장, 장경식·김원석 의원

- 2012 YOYO 문화제 참석
 - 일 시 : 2012. 9. 11(화) 13:30
 - 장 소 : 예천군 문화회관
 - 참 석 : 고우현·이상용·이경임 의원

- 2012 도민 의식 선진화 교육 참석
 - 일 시 : 2012. 9. 11(화) 15:30
 - 장 소 : 성주가야산 호텔
 - 참 석 : 박기진 의원

- 전국 시·도 의장협의회 참석
 - 일 시 : 2012. 9. 11(화) 17:00
 - 장 소 : 충남 아산 온양관광호텔
 - 참 석 : 송필각 의장

- 제8회 경상북도·허난성 국제미술교류전 참석
 - 일 시 : 2012. 9. 11(화) 18:00
 - 장 소 : 안동문화예술의전당
 - 참 석 : 김명호 의원

- **평화홀딩스 & NOK社 영천경제자유구역 투자양해각서 체결식 참석**
 - 일 시 : 2012. 9. 12(수) 11:00
 - 장 소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 참 석 : 한혜련 부의장, 박진현·김수용 위원장

- **청송군 의용소방대연합회 체육대회 참석**
 - 일 시 : 2012. 9. 12(수) 11:00
 - 장 소 : 청송 중평숲
 - 참 석 : 김영기 의원

- **낙동강 국제 물주간 행사 개막식 참석**
 - 일 시 : 2012. 9. 12(수) 17:00
 - 장 소 : 안동대학교
 - 참 석 : 송필각 의장, 김명호·이영식 의원

- **제14회 보건복지부장관배 꿈나무 축구대회 개최식 참석**
 - 일 시 : 2012. 9. 12(수) 17:00
 - 장 소 : 경주황성공원 축구장
 - 참 석 : 박병훈 위원장, 이상효 의원

- **경상북도 지방분권협의회 창립총회 참석**
 - 일 시 : 2012. 9. 13(목) 10:30
 - 장 소 : 도청강당
 - 참 석 : 송필각 의장, 김명호·김창숙·김하수·도기욱 의원

- 영주지역 교육협의회 참석
 - 일 시 : 2012. 9. 13(목) 11:00
 - 장 소 : 영주교육지원청
 - 참 석 : 홍광중 의원

- 제62주년 영천대첩 기념행사 참석
 - 일 시 : 2012. 9. 13(목) 11:30
 - 장 소 : 국립영천호국원
 - 참 석 : 한혜련 부의장, 김수용 위원장

- 지역언론사 간부 간담회 참석
 - 일 시 : 2012. 9. 13(목) 12:00
 - 장 소 : 대구시 일원
 - 참 석 : 박병훈 위원장

- 2012년 건강백세 운동교실 발표대회 참석
 - 일 시 : 2012. 9. 13(목) 13:00
 - 장 소 : 구미시 민방위교육장
 - 참 석 : 이태식 의원

- 경상북도 여성아카데미 참석
 - 일 시 : 2012. 9. 13(목) 13:30
 - 장 소 : 포항 티파니웨딩
 - 참 석 : 채옥주 위원장

- 한국 로봇융합연구원 개원식 참석
 - 일 시 : 2012. 9. 13(목) 14:00
 - 장 소 : 한국로봇융합연구원(포항)
 - 참 석 : 장경식·김희수 의원

- 2012 대구경북 섬유·패션업계 CEO 워크숍 참석
 - 일 시 : 2012. 9. 13(목) 15:00
 - 장 소 : 경주 코오롱호텔
 - 참 석 : 박병훈 위원장, 이상효 의원

- 한국자유총연맹 2012 전국 시·군·구 여성회장 워크숍 참석
 - 일 시 : 2012. 9. 13(목) 15:40
 - 장 소 : 경주교육문화회관
 - 참 석 : 한혜련 부의장, 박병훈 위원장, 이상효 의원

- 2012 경북 한우경진대회 참석
 - 일 시 : 2012. 9. 14(금) 10:00
 - 장 소 : 구미 선산가축시장
 - 참 석 : 정상진 위원장, 광광섭·나기보·변우정·
심정규·이태식 의원

- 물의날 기념 경북스카우트 야영대회 격려
 - 일 시 : 2012. 9. 14(금) 10:00
 - 장 소 : 상주보 일원
 - 참 석 : 홍광중 의원

- 2012년 경상북도 마이스터 대전 참석
 - 일 시 : 2012. 9. 14(금) 11:00
 - 장 소 : 구미코
 - 참 석 : 송필각 의장, 박진현 위원장, 구자근·김봉교·박태환·변우정·심정규·이태식 의원

- 제32회 장사상륙작전 전물용사 합동위령제 참석
 - 일 시 : 2012. 9. 14(금) 11:00
 - 장 소 : 영덕 장사상륙작전 전물용사 위령탑
 - 참 석 : 김기홍 의원

- 경북지역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연수회 참석
 - 일 시 : 2012. 9. 14(금) 14:00
 - 장 소 : 울진 백암한화콘도
 - 참 석 : 박진현 위원장

- 수로부인 현화가 학술심포지엄 참석
 - 일 시 : 2012. 9. 14(금) 14:00
 - 장 소 : 영덕군민회관
 - 참 석 : 김기홍 의원

- 도민과 함께하는 학교폭력예방 세미나 참석
 - 일 시 : 2012. 9. 14(금) 14:00
 - 장 소 : 포항시청
 - 참 석 : 채옥주 위원장, 장경식·김원석 의원

- “찾아가는 독도” 청소년 순회 교육 참석
 - 일 시 : 2012. 9. 14(금) 14:20
 - 장 소 : 김천 성의여고
 - 참 석 : 배수향 의원

- 도의회사무처 직장협의회 한마음대회 참석
 - 일 시 : 2012. 9. 14(금) 18:00
 - 장 소 : 경상북도청소년수련센터
 - 참 석 : 송필각 의장, 한혜련 부의장, 박병훈 위원장,
나기보·배수향 의원

- 제4회 상주시민 녹색자전거 대행진 참석
 - 일 시 : 2012. 9. 15(토)
 - 장 소 : 북천시민공원
 - 참 석 : 강영석·한재석 의원

- 2012년 경상북도 보육인 한마음대회 참석
 - 일 시 : 2012. 9. 15(토) 11:00
 - 장 소 : 안동실내체육관
 - 참 석 : 송필각 의장, 채옥주 위원장, 김말분·김명호·
이영식 의원

- 자유산악회 전국회원 한마음 등반대회 참석
 - 일 시 : 2012. 9. 15(토) 11:00
 - 장 소 : 문경새재
 - 참 석 : 이경임 의원

- 의성 낙단보 水축제 참석
 - 일 시 : 2012. 9. 15(토) 17:00
 - 장 소 : 낙단보
 - 참 석 : 나현아·이왕식 의원

- 2012년 추석명절 사회복지시설 위문
 - 일 시 : 2012. 9. 17(화) ~ 9. 28(금)
 - 장 소 : 23개 시·군 사회복지시설(399개소)
 - 참 석 : 쉼 도의원

- 태풍피해 현장조사 및 복구지원
 - 일 시 : 2012. 9. 17(화) ~ 9. 28(금)
 - 장 소 : 시군 태풍지역
 - 참 석 : 농수산 위원

- “고운 최치원 선생” 일대기 특별 전시전 참석
 - 일 시 : 2012. 9. 17(월) 16:00
 - 장 소 : 경주박물관
 - 참 석 : 최우섭 위원

- 태풍 “산마” 피해복구지원 및 현장 방문 격려
 - 일 시 : 2012. 9. 18(수) ~ 10. 3(수)
 - 장 소 : 23개 시·군 피해지역
 - 참 석 : 쉼 도의원

- 방폐공단, 추석맞이 지역사랑나눔 행사 참석
 - 일 시 : 2012. 9. 18(화) 14:00
 - 장 소 : 경주시 일원
 - 참 석 : 박병훈 위원장

- 북부지역발전포럼 토론회 참석
 - 일 시 : 2012. 9. 18(화) 15:00
 - 장 소 : 영주상공회의소
 - 참 석 : 김종천 의원

- 경주시 생활 개선회 모임 참석
 - 일 시 : 2012. 9. 19(수) 10:00
 - 장 소 : 농업기술센터 농어민회관
 - 참 석 : 이 달 의원

- 제10회 문경시 시각장애인 경로잔치 및 복지증진대회
참석
 - 일 시 : 2012. 9. 19(수) 10:00
 - 장 소 : 문경 황제웨딩홀
 - 참 석 : 이시하·고우현·이경임 의원

- 제17회 여성주간 기념식 및 2012 예천군 여성대회 참석
 - 일 시 : 2012. 9. 19(수) 10:00
 - 장 소 : 예천군 문화회관
 - 참 석 : 정상진 위원장, 도기욱 의원

- 경상북도의회사무처 태풍 “산바” 피해지역 영농지원 참석
 - 일 시 : 2012. 9. 19(수) 10:30
 - 장 소 : 포항시 기계면
 - 참 석 : 송필각 의장, 박병훈 위원장, 장세현·김말분·김희수·한창화 의원

- 제27회 전국지적장애인복지대회 참석
 - 일 시 : 2012. 9. 19(수) 11:00
 - 장 소 : 안동실내체육관
 - 참 석 : 김명호·이경임·이영식·홍광중 의원

- 대구 도시철도 2호선 연장 개통식 참석
 - 일 시 : 2012. 9. 19(수) 15:00
 - 장 소 : 영남대학교
 - 참 석 : 송필각 의장, 황상조·김세호·김영식·김창숙·서정숙·윤성규 의원

- 청도군 이장 연합회 체육대회 참석
 - 일 시 : 2012. 9. 20(목) 11:00
 - 장 소 : 청도 군민실내체육관
 - 참 석 : 김하수·박권현 의원

- 경상북도 여성아카데미 참석
 - 일 시 : 2012. 9. 20(목) 13:30
 - 장 소 : 포항 포스코 국제관
 - 참 석 : 채옥주 위원장, 장경식 의원

- 4대강 문화관 디아크 개관기념식 참석
 - 일 시 : 2012. 9. 20(목) 14:30
 - 장 소 : 달성 강정보
 - 참 석 : 송필각 의장

- 안동대학교 공자학원 개소식 참석
 - 일 시 : 2012. 9. 20(목) 16:00
 - 장 소 : 안동대학교 국제관
 - 참 석 : 홍광중 의원

- 제9회 전국자원봉사센터 대회 참석
 - 일 시 : 2012. 9. 20(목) 16:20
 - 장 소 : 경주교육문화회관
 - 참 석 : 박병훈 위원장, 이상효·최학철 의원

- 국외 문화재협의회 참석
 - 일 시 : 2012. 9. 20(목) 18:00
 - 장 소 : 경주현대호텔
 - 참 석 : 박병훈 위원장, 이상효 의원

- 세계 생명공학대회 환송만찬 참석
 - 일 시 : 2012. 9. 20(목) 19:25
 - 장 소 : 경주EXPO
 - 참 석 : 박병훈 위원장, 이상효 의원

- 영일만항 수중정화 및 치어방류행사 참석
 - 일 시 : 2012. 9. 21(금) 10:00
 - 장 소 : 포항 영일만항
 - 참 석 : 김희수 의원

- 제93회 전국체전 경북선수단 필승결의대회 참석
 - 일 시 : 2012. 9. 21(금) 11:00
 - 장 소 : 경산실내체육관
 - 참 석 : 송필각 의장, 황상조·김영식·김창숙 의원

- 포항 교육지원청 기공식 참석
 - 일 시 : 2012. 9. 21(금) 14:00
 - 장 소 : 포항 북구 양덕동
 - 참 석 : 장세현·김말분·김원석·김희수 의원

- 영양 빛깔찬 일자리지원센터 준공식 참석
 - 일 시 : 2012. 9. 21(금) 14:00
 - 장 소 : 영양군 일월면
 - 참 석 : 이상용 의원

- 민주평통 15기 경북B권역 자문위원 연수회 참석
 - 일 시 : 2012. 9. 21(금) 14:00
 - 장 소 : 구미금오산 호텔
 - 참 석 : 박태환 의원

- 경상북도 지체장애인 어울림 한마당행사 참석
 - 일 시 : 2012. 9. 21(금) 15:00
 - 장 소 : 칠곡교육문화회관
 - 참 석 : 송필각 의장

- 한류 드림페스티벌 패밀리 드림 콘서트 참석
 - 일 시 : 2012. 9. 21(금) 18:30
 - 장 소 : 경주 시민운동장
 - 참 석 : 박병훈 위원장, 이상효·최학철 의원

- 봉화 송이축제 개막식 참석
 - 일 시 : 2012. 9. 22(토)
 - 장 소 : 봉화 체육공원
 - 참 석 : 권영만·이경임 의원

- 낙동미로 릴레이자전거축제 참석
 - 일 시 : 2012. 9. 22(토) 10:00
 - 장 소 : 안동 시민생활체육공원
 - 참 석 : 김명호·이영식 의원

- 포항 축산인 한마음대회 참석
 - 일 시 : 2012. 9. 22(토) 11:00
 - 장 소 : 포항시 농산물도매시장
 - 참 석 : 김희수·이정호·한창화 의원

- 2012 경북학생바둑대회 개막식 참석
 - 일 시 : 2012. 9. 23(일) 10:00
 - 장 소 : 구미전자공고
 - 참 석 : 심정규 의원

- 2012 한류 드림페스티벌 한류드림콘서트 참석
 - 일 시 : 2012. 9. 23(일) 17:30
 - 장 소 : 경주 시민운동장
 - 참 석 : 박병훈 위원장, 이상효·최학철 의원

-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청 조합이사회 참석
 - 일 시 : 2012. 9. 24(월) 10:30
 - 장 소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회의실
 - 참 석 : 김희수 의원

- 2012 국가대표 4차 선발전 겸 제12회 해양경찰청장배 전국 요트대회 참석
 - 일 시 : 2012. 9. 24(월) 11:00
 - 장 소 : 울진 후포요트경기장
 - 참 석 : 황이주 의원

- 경북도 다문화 어울림 마당 참석
 - 일 시 : 2012. 9. 24(월) 11:00
 - 장 소 : 육군 3사관학교
 - 참 석 : 한혜련 부의장, 김수용 위원장

- **도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식 참석**
 - 일 시 : 2012. 9. 24(월) 11:30
 - 장 소 : 의장실
 - 참 석 : 송필각 의장, 박성만 부의장, 박병훈 위원장

- **제6회 건축위원회 참석**
 - 일 시 : 2012. 9. 24(월) 14:00
 - 장 소 : 의회 제2별관 회의실
 - 참 석 : 윤성규·홍진규 의원

- **민족통일 경상북도대회 참석**
 - 일 시 : 2012. 9. 24(월) 15:00
 - 장 소 : 칠곡 교육문화회관
 - 참 석 : 송필각 의장

- **제16회 경상북도 노인의 날 행사 참석**
 - 일 시 : 2012. 9. 25(화)
 - 장 소 : 울진 청소년수련관
 - 참 석 : 전찬걸 위원장, 황이주 의원

- **태풍 “산마” 영농지원 참석**
 - 일 시 : 2012. 9. 25(화) 11:00
 - 장 소 : 성주군 벽진면
 - 참 석 : 송필각 의장, 박기진·정영길 의원

- 문경 우로실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개소식 참석
 - 일 시 : 2012. 9. 25(화) 11:00
 - 장 소 : 문경 호계면 우로실 마을회관
 - 참 석 : 고우현 의원

- 울릉 추석맞이 환경대청결운동 참석
 - 일 시 : 2012. 9. 25(화) 14:00
 - 장 소 : 울릉읍 도1리 일원
 - 참 석 : 이용진 위원

- 지역발전 플랜트건설 기공식 참석
 - 일 시 : 2012. 9. 25(화) 14:00
 - 장 소 : 포항시 흥해읍 남송리
 - 참 석 : 장경식·김희수 의원

- 제1회 무지개 예술축제 참석
 - 일 시 : 2012. 9. 25(화) 14:00
 - 장 소 : 대구미래대
 - 참 석 : 최우섭 위원

- 동김천 나들목 개통식 참석
 - 일 시 : 2012. 9. 25(화) 14:00
 - 장 소 : 동김천 나들목
 - 참 석 : 배수향 의원

- **젓소개량사업소 영양분산사업장 준공식 참석**
 - 일 시 : 2012. 9. 25(화) 15:00
 - 장 소 : 영양군 수비면 신원리 영양분산사업장
 - 참 석 : 이상용 의원

- **2012년 인성교육 우수유치원 공모전 참석**
 - 일 시 : 2012. 9. 25(화) 15:00
 - 장 소 : 구미자연환경연수원
 - 참 석 : 구자근 의원

- **칠곡 약목 119지역대 청사 준공식 참석**
 - 일 시 : 2012. 9. 25(화) 15:00
 - 장 소 : 칠곡 약목
 - 참 석 : 송필각 의장, 김희원 의원

- **제20회 구미소방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참석**
 - 일 시 : 2012. 9. 26(수)
 - 장 소 : 해평 청소년수련원
 - 참 석 : 윤창욱·변우정 의원

- **다문화가정 방문**
 - 일 시 : 2012. 9. 26(수) 11:00
 - 장 소 : 포항시 연일읍 괴정리
 - 참 석 : 김희수 의원

-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참석
 - 일 시 : 2012. 9. 26(수) 11:00
 - 장 소 : 칠곡 왜관시장
 - 참 석 : 송필각 의장, 김희원 · 추재천 의원

-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및 민생현장 방문
 - 일 시 : 2012. 9. 26(수) 12:20
 - 장 소 : 포항 죽도시장
 - 참 석 : 채옥주 위원장, 장세헌 · 김말분 · 김희수 · 이정호 · 한창화 의원

- 칠곡군 초·중등 교직원 체육대회 참석
 - 일 시 : 2012. 9. 26(수) 13:00
 - 장 소 : 왜관중학교, 칠곡동부초등학교
 - 참 석 : 추재천 의원

- 제9회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 일 시 : 2012. 9. 26(수) 14:00
 - 장 소 : 의회 제2별관 회의실
 - 참 석 : 장두욱 위원장, 김희원 의원

- 제39회 세계 관광의 날 기념행사 참석
 - 일 시 : 2012. 9. 27(목) 11:40
 - 장 소 : 경주현대호텔
 - 참 석 : 박병훈 위원장, 이상효 · 최학철 의원

- 학교폭력지역대책위원회 회의 참석
 - 일 시 : 2012. 9. 28(금) 14:00
 - 장 소 : 도의회 세미나실
 - 참 석 : 이태식 의원

-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 2012 개막식 참석
 - 일 시 : 2012. 9. 28(금) 19:00
 - 장 소 : 안동 탈춤공원
 - 참 석 : 박성만 부의장, 김명호·이영식 의원

VI. 5분 자유발언

□ 2012년 10월 18일 제2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 김봉교 의원(기획경제위원회, 구미) ◎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대책 관련>>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출신 김봉교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참담한 심정으로 지난 9월 27일 발생한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에 대하여 도차원의 세심하고 지속적인 피해 대책 마련과 더불어 향후 각종 유해 화학물을 비롯한 안전관리 및 재난대비 시스템의 체계적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두가 우려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금 구미 산동면 봉산리·임천리 주민들은 사상 초유의 대규모 유독성 가스누출 사고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고당시 5명의 안타까운 생명을 앗아가고 18명이 부상하였으며, 피해지역 주민 건강 검진 수가 13일 현재 10,100명이나 됩니다. 육안으로 확인된 농작물 피해도 252.7ha에 달하고 기침, 콧물, 호흡기 이상 등 가축피해가 3,528두,

차량 1,419대, 산림 67.7ha 등 도대체 이 피해가 어디까지일지
가늠조차 어려운 암울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사고당시 정부당국과 관계기관의 조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은 찾아보기 힘들었으며, 안이한 판단과 대처로
인해 피해를 더욱 키웠다는 원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고는 국내 최초의 불산 누출사고이자 유동성 화학물질
누출로는 전례없는 규모로 이미 많은 인명피해와 더불어 피해
지역 주민들은 불안감으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으며, 정부와
구미시 등 관계당국의 부실한 대처를 지켜보면서 불신감만 커져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사고발생 12일만인 지난 8일 정부
차원에서 불산가스 누출의 직접적 피해지역인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대책을 마련
하였다는 점입니다만, 여전히 피해지역주민들은 공포와 불안감
으로 힘겨워 하고 있습니다.

매번 우리는 엄청난 고통을 경험한 후에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급급합니다. 대형사고 발생 시마다 안전불감증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와 더불어 안전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체계적
사후조치를 거듭 촉구만 하다가 이내 잠잠해져 버립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과 대가를 치러야만 제대로 된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을 지 안타깝고 참담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특히 우리 경북도에는 유독물질 제조업체가 구미 19개 업체를 비롯하여 총 48개 업체가 있고, 9개의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하여 62개의 지방산업단지, 월성, 울진 원자력발전소 등 각종 사고위험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뼈저리게 경험하였듯 화학물질, 특히 유독성 가스 누출 사고 등은 설마하는 사이 견잡을 수 없는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고 방지 및 사후대책 매뉴얼이 그 어느 지역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으나 이제까지 이러한 위험지역 및 시설의 안전관리대책이 미흡하였고, 이번 불산 누출사고 직후에도 관계기관이나 부처 간에도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혼란과 혼돈 속에서 헤매었습니다.

사고발생 20여 일이 지난 지금도 구미 산동면 봉산리·임천리 일대 190가구 340여 명의 주민들은 그리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구미환경자원화 시설과 구미청소년수련원에 머물면서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눈물과 한숨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공단 기업체와 근로자 및 인근지역 주민들 역시 엄청난 재산손실과 사고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주민건강 관리대책 및 지원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1일 국무총리실에서 밝힌바와 같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각 분야별 지원계획을 조속히 실행에 옮기고, 피해주민과의 지속적인 의견조율을 통하여 최대한 피해주민입장에서 충분한 보상과 건강관리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합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문제인 만큼 재난안전관리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도차원에서도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소방본부, 치수방재과, 안전정책과 등에서 각기 산발적으로 운영되어 효율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각종 안전사고 예방부분은 각 주무부서에서 철저히 관리해 나가고, 유사시 재난관리를 총 지휘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관련 전문가집단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인력풀 운영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도민들의 안전의식 고취와 더불어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및 훈련 등을 통해 유사시에 조속히 대응 할 수 있도록 도차원에서 더욱 전향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셋째, 특수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 그리고 방재 장비 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각종 화학사고 발생 시 요구되는 화학보호복만 보더라도 경북도의 경우 최소 355벌 정도가 필요하나 실제 108벌로 247벌이나 부족한 실정으로 보유율 30.4% 수준이며, 그마저 구미에는 5벌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사고당시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 및 관계공무원들 역시 열악한 장비 등으로 인해 피해가 가중되었습니다. 위기관리 시스템의 정비와 더불어 관련

전문인력 및 장비지원이 선행되어야 갖추어진 시스템도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일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사명이자 책무입니다. 그러나 사고당시 관계기관의 허술한 시스템과 미흡한 초동대응은 울퉁이 정부와 관계기관만을 믿고 의지하는 주민과 도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실망만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에 대한 불신감으로 가득 차 있는 지역주민들의 마음에 신뢰를 회복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경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도내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시설과 지역을 철저히 점검하고 유사시에 도 체계적인 대응 매뉴얼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 구축과 더불어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마련 및 전담부서 신설을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무엇보다 돌아선 피해지역 주민의 애타는 아픔과 고통에 귀기울이고 아픈 상처를 세심하게 보듬고 치유하여 피해지역 주민들이 다시 안정을 되찾고 건강한 생활 터전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차원에서 적극 나서주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2년 10월 18일 제2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 정영길 의원(농수산위원회, 성주) ◎

<<수해지역 피해지원 관련>>

농수산위원회 소속
성주출신 정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감사합니다.

지난 9월 중순 태풍 '덴빈', '볼라벤'으로 인한 피해가 채 아물기도 전에, 태풍 '산바'로 인해 우리 도 전체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인명 피해, 주택·상가 침수, 농경지 유실, 과수낙과, 시설하우스 파손 등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민심을 더욱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최근 구미 불산누출사고란 인재(人災)로 우리 도민들은 너무나도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구미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민들과 더불어 태풍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도민들도 여전히 생업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과 피해복구 지원기준이 달라 더 큰 피해를 입고도 더 적은 보상을 받는 제도적 문제에 대해 짚어보고자 함입니다.

태풍이 지나간 이후 너무나도 처참한 피해현장에서 공무원, 군인, 대학생, 자원봉사자 등 수많은 분들이 피해복구를 위해 구슬땀을 흘려 상처 난 수재민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었습니다. 이번 복구현장에서 저도 함께 일하면서, 어려울 때 일수록 더욱 힘을 모으는 경북도민의 저력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수재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태풍 '산바'로 공공시설 및 사유재산 등의 피해액이 포항 108억원, 경주 166억원, 김천 430억원, 고령 113억원, 성주 323억원 등 총 1,140억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번 태풍에 피해가 극심한 포항, 경주, 김천, 고령, 성주 등 5개 시군은 지난 9월 2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수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수재민들에게 그나마 위로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도내 두 번째로 큰 피해지역인 성주를 예로 들면, 9월 16일에서 17일 이틀간 평균 297mm, 시간당 최고 70mm의 기록적인 강우량을 기록하면서, 산사태로 1명이 사망하고, 도로가 끊기고, 하천둑이 무너져 주택, 상가 등 900여 동이 파손·침수 되어 660세대 1,2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너무도 크나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액만도 320억원이 훨씬 넘었습니다.

이러한 피해 중 건물 침수 유형을 살펴보면 주택파손 16동, 주택침수 461동, 상가침수 426동 등 총905동으로 나타나는데, 주택과 상가 침수의 피해복구 지원기준이 너무나 달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침수피해임에도 피해복구 지원기준에 따라 주택침수는 재난지원금 100만원과 재해구호협회가 지급하는 수재의연금 100만원 등 약 200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나, 주택보다 피해액이 훨씬 큰 상가와 소상공인의 경우 경상북도 재해구호기금 100만원이 전부입니다. 이에 지역 소상공인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원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더군다나 지난 9월 2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지만, 대부분 공공시설 복구에 지원되며, 지역민과 소상공인들에게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크게 없습니다.

과거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 소상공인 수해피해에 대한 특별 위로금 200만원 등이 있었으나, 2006년 정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를 삭제하면서 이마저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져 수재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주택이든 상가든 공장이든 하루 아침에 생활 터전을 잃은 침수피해의 처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침수피해를 당하고도 지원기준이 달라서 더 큰 피해를 입고도 더 작은 금액을 보상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관용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경상북도는 도민 모두가 잘 사는, 도민 모두가 행복한 지역이 되어야 하는데 본 의원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 보다 현실에 맞는 세심하고 합당한 피해 지원기준 마련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계법령,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관련 규정, 지침 등의 제도적 개정과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인 건의 등 최선의 노력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현실에 맞고, 피해에 따른 경중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경북도가 선도적으로 찾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난 10일 이번 태풍 산바로 인한 경북도의 피해복구비가 피해조사 결과보다 1,041억원이나 증액된 3,779억원으로 확정된 것은 경북도와 시군 공무원들의 피나는 노력과 복구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의지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인 피해 지원과 조속한 완전 복구로 우리 도민들의 고통이 하루 속히 덜어지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2년 10월 18일 제2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 강영석 의원(농수산위원회, 상주) ◎

<<땅을 잃을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도민의 마음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소속
상주출신 강영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필각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관용 지사님,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정부의 일방통행식 행정구역 경계조정 시도와 충청북도 괴산군의 음모에 경종을 울리고, 우리 도의 도계지역에 대한 관심제고와 균형발전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9월 중순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상주시 화북면 입석1, 2리¹⁾, 문경시 가은읍 완장2리²⁾를 대상으로 시·도간 「경계변경대상지역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이에 앞서 9월 13일 청와대 사회통합수석은 “행정구역의 불합리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을 청취” 했으며, 괴산군에서는

1) 177가구 395명

2) 21가구 48명

화북면 입석리 주민들의 참석을 수차례 유도했습니다.

지역주민들과 정치권의 강력한 이의제기로 비민주적 불통 행정과 몰염치한 시도는 제동이 걸렸지만,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는 원인이 있어 경상북도의 체계적인 대비와 상처받은 지역민을 위로하고 경북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여줄 대책이 필요합니다.

경상북도와 상주시는 충청북도 및 괴산군과 문장대·용화 온천지구³⁾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27년간 갈등과 소송을 벌였으며, 환경단체 등을 동원한 충청북도의 조직적인 방해로 두 번이나 대법원에서 패소⁴⁾했습니다.

충북이 반대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식수원 오염이지만 “문장대 온천이 개발되면 법주사와 충북을 찾는 관광객이 경북으로 유출되고, 괴산의 소규모 온천이나 수안보지역이 경제적으로 입을 타격” 때문이라는 것이 언론의 보도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온천개발사업이 좌절되자 해당지역 주민⁵⁾들이 “우릴 소외시키는 경북과 상주를 버리고 충북으로 가자”고

3) 용화지구는 1985년 경북도가 258만 2천㎡를 온천지구로 지정 1991년 착공됐으며, 인접한 문장대지구는 1985년 경북도가 272만㎡를 온천지구로 지정 1996년 개발시작, 충북에서 1996년 온천개발 허가 취소 소송제기

4) 2003년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개발면적 축소 및 우수처리공법 변경 조건으로 상주시 개발 재허가 2009년 대법원에서 패소

5) 상주시 화북면 운흥1, 2리, 중별1, 2리 4개 마을

집단행동⁶⁾을 하기도 했으며,

대법원에서 1차 패소 후 온천개발지구 주민들이 충북으로 편입을 요구한다는 여론을 충북에서 퍼트리며 온천지구를 탐낸 의혹도 있었습니다.

충청북도의 진짜 속셈은 입석리는 물론, 온천개발지구를 편입 하는데 있다고 생각하며 이번 사건은 한마디로 성동격서(聲東擊西)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괴산군은 “도계마을 생활권 통합을 위한 농산물생산 유통과정 지원 대책을 수립한다고 절임배추 및 대학찰옥수수 생산 현황을 파악”한다고 화북면과 가은읍에 공문을 보냈으며, 고추건조기 및 고추유통 지원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화북면민들을 괴산지역 축제에 초청하고, 수년째 주민 간에 체육행사를 하고 있으며, 금년 6월에는 지역민에게 ‘괴산군 발전 유공자 표창’을 주는 정치쇼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화합과 상생을 주장하면서 꿈수를 부리는 현 상황에서 정말 걱정되는 것은 「경북의 땅을 잃을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도민의 마음을 잃을까 두려운 것」입니다.

지사님과 교육감님께 촉구합니다.

6) 2007년 4월부터 수차례 발생, 관계기관에 행정구역 개편 건의문 발송 등

늘 우리는 “지방에도 사람이 삽니다. 우리도 국민이라고 주장합니다. 경북에도 지방이 있습니다. 그들도 도민입니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경상북도 도계지역정책과 타 시·도의 도계지역 정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우리 도의 장·단기 대책수립이 필요합니다.

정치인에게 있어 지역구는 생명이며, 그 누구든 지역구의 나무 한 그루, 풀 한포기, 돌멩이 하나라도 함부로 넘볼 수 없다는 말씀을 끝으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12년 10월 18일 제2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 황이주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울진) ○

<<원전주변지역 질병 역학 조사 관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울진출신 황이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달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와 지역 주민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하루 빨리 사태가 수습되길 소망해 봅니다.

여느 사건이 그러합니다만 이번 사태 역시 평소에 우리가 조금만 더 안전 관리에 신경을 썼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2, 제3의 구미 사태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또 사고 발생 시보다 신속·정확하게 대응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 등에 대한 현황도나 위치도를 우리 경북도가 일선 시군과 연대해 제작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제 발언의 주제로, '원자력발전소로 인한 각종 질병에 대한 진상조사 촉구'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미 각종 마스크를 통해 익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질환, 그 중에서도 갑상선암 발병률입니다.

최근 정부로부터 용역을 받은 한 연구소가 원전과 갑상선 암 발병률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자 반핵 의사회 측이 관계가 있다며 서로 상반된 의견을 제시해 주민들이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연구는 서울대학교 의학연구원 원자력영향 역학연구소의 '원전 종사자 및 주변지역 주민 역학조사'입니다.

지난 1992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연구 용역을 의뢰받아 2011년 2월까지 20년 동안 이뤄진 이 조사에서 원전 5km 이내 거주 여성의 경우 갑상선암 발병률이 30km 밖 거주 여성에 비해 2.5배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원전에서 5km 미만 근거리에 사는 여성의 갑상선암 발생률은 10만 명당 61.4명이며 이는 30km 이상 원거리 거주 여성의 26.6명에 비해 통계적으로 2.5배 높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조사를 담당해 온 서울대 연구소 측은 이를 두고 "갑상선암 이외 다른 암들은 통계적 의미가 없었고 그런 만큼 원전과 갑상선암과는 인과적 관련성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핵 의사회 측은 “서울대 연구소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 원전 가까이 살수록 갑상선암 발생률이 높게 나왔다”면서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대형 원전사고가 아니어도 원전이 인근 주민들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같은 내용의 주민설명회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동일한 자료를 놓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서로 상반된 의견을 내 놓고 있는데 어떤 의견을 믿어야 할까요.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해서 저는 우리 도가 나서서 정밀 진상 조사에 나서길 희망해 봅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향후 원전 주변의 방사능과 관련된 각종 질병 발생에 대한 역학조사를 우리 도 산하의 의료원에 맡기길 촉구합니다.

이럴 경우 원전에서 징수하는 지역개발세의 일부를 도 산하 의료원에 지원할 수 있어 악화일로에 있는 의료원의 경영난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북도가 나선 만큼 주민들의 혼란도 동시에 해소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원전 주변 지역에 상존하는 방사능과 그 관리입니다. 현재는 원전측이 지역의 모 대학에 용역을 주어 그 결과를 1년에 한 차례씩 공개하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에 대한 주민 신뢰도는 그리 높지가 않습니다.

해서 저는 이것 역시 우리 도가 직접 챙기길 촉구합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나서서 경주시와 울진군이 정부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와 연대, 필요한 전문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는 등 이 사업을 한수원과 별도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는 대안도 함께 제시해 봅니다.

경주시민과 울진군민, 더 나아가 도민들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우리 경북도가 진정으로 원전에 대한 환경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 해 주길 고대하면서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서없는 발언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 록



- 조례안 : 6건(원안가결 5, 수정가결 1)
- 결의안 : 2건(원안가결)

■ 조 례 안

-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설립 및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2년 10월 18일

경상북도의회 조례 제 호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독립운동가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경북의 정체성을 정립·확산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을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법인의 설립·운영) ①법인의 명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기념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의한다.

제 3 조(사업) 기념관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독립운동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전시
2. 독립운동사 등의 역사정립을 위한 조사·연구
3. 독립운동정신 함양 및 올바른 국가관 정립을 위한 교육

4. 기념관 시설의 관리

5. 그 밖에 기념관 설립 목적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 4 조(재산의 조성) 기념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경상북도 또는 시·군 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3. 독립운동과 관련 있는 기관, 단체 및 법인의 출연재산
4. 그 밖에 자체 사업수익금 등

제 5 조(운영비 등 지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념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 6 조(정관) ①기념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규정
5.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기념관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 조(임원) ①기념관은 이사장 및 관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임원의 선출방법 및 임기, 임원의 직무 등 세부사항은 기념관 정관으로 정한다.

제 8 조(사업위탁 및 운영지원 등) ①도지사는 기념관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기념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기념관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 직접 지원하거나, 기념관과 관계있는 기관·단체가 기념관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 9 조(공유재산의 대부) 도지사는 기념관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10조(사업계획 및 결산) ①기념관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기념관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사업실적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검사 등) ①도지사는 기념관에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기념관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기념관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시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경상북도 출연금
-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운영비 등
- ※ 안동시 출연금 및 운영비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출연금은 경상북도와 안동시간 협의와 양 자치단체 의회의 승인이 수반되어야만 하는 사항으로
- 재단법인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설립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 후(12. 11월 예정) 비용의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4. 작성자 : 경상북도 사회복지과 보훈선양 담당사무관 이복영

경상북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2년 10월 18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2.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이란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 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3.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란 경로당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들이 모든 경로당에 지원될 수 있도록 연계·조정 지원할 수 있는 전담인력을 말한다.

제 3 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신고필증을 교부한 경상북도 내

경로당과 이용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

제 4 조(도지사의 책무)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의 안전한 보호와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 지원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 5 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도지사는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지역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참여 활동에 관한 사항
4. 경제활동을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
5.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연계·협력 구축에 관한 사항
6. 경로당 지원계획의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도지사는 제2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련기관·단체의 대표자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6 조(사업 및 예산지원) ①도지사는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2. 여가·문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
3.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4. 지역봉사활동 등 지역사회 참여 활동
5. 노인동공작업장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②도지사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③제1항과 제2항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7 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경상북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예산 추계

2. 비용추계

경북도내 경로당은 2012년 6월말 기준 7,494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총 예산 287억 6천6백만원 중 국비 61억 3천만원 (21.3%), 도비 49억 7천5백만원(17.3%), 시군비 172억 8천6백만원(60.11%)이 지원되고 있음. 전체 예산중 도비의 부담은 시군비와 국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음.

〈표 1〉 2012년 경로당 지원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량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산 출 기 준
		28,766	6,130	4,975	17,286	
경로당운영비	7,413	14,805		2,692	12,113	운영비: 72만원(개소/연) 난방비: 50만원(개소/연) 특별난방비: 70-85만원(개소/연)
경로당 활성화사업	12	120		36	84	12개소×0백만원
경로당순회 프로그램운영	1	30		30		인건비 1명×0백만원
동절기난방비	7,413	11,120	5,560	1,668	3,892	7,413개소×0만원×6개월
양곡지원	7,413	2,280	570	513	1,197	월1포(읍지역 7, 동지역 6개월)
냉방비 (특별교부세)	7,494	375				개소당 50천원(1개월) (2012. 7. 31 기준 지원)
건강기구지원	40	36		36		발마사지기 40개×0만원

조례 제정에 따른 5년간 경로당 수는 2012년 7,494개소에서 2016년 7,647개소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전체예산 규모는 2012년 287억 2천3백만원에서 2016년 292억 6천 7백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2년 기준 도비 부담 비율 17.3%를 적용할 경우 예산의 추가적인 부담은 미미한 수준에 있을 것으로 예상됨(〈표 2〉 참조).

〈표 2〉 경북도내 5년간 경로당 지원 예산 추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사업량 (건,명)	예산								
합 계	22,553	28,723	22,694	28,903	22,828	29,003	22,909	29,132	23,001	29,267
경로당운영비	7,500	14,979	7,547	15,073	7,591	15,073	7,617	15,125	7,647	15,185
경로당 활성화사업	12	120	12	120	14	140	17	170	19	190
경로당순회 프로그램운영	1	30	1	30	1	30	1	30	1	30
동절기난방비	7,500	11,251	7,547	11,322	7,591	11,388	7,617	11,427	7,647	11,472
양극지원	7,500	2,307	7,547	2,322	7,591	2,336	7,617	2,344	7,647	2,354
건강기구지원	40	36	40	36	40	36	40	36	40	36

* 매년 약 3~5% 정도의 예산 증가를 반영하여 추계함.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2년 10월 18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우수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우수농식품 소비촉진을 통한 경제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전개되고 있는 로컬푸드 운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수농식품”이란 친환경농산물인증, GAP인증, 전통식품 품질인증, 유기가공식품인증, 도지사품질인증 등을 통해 생산되어 도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농축산물과 식품을 말한다.
2. “로컬푸드 정책”이란 도민들의 건강한 삶의 보장과 농촌 주민들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우수농식품과 관련된 모든 시책이나 정책을 말한다.

제 3 조(로컬푸드 정책협의회의 설치) ①도지사는 로컬푸드

정책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로컬푸드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우수농식품 소비촉진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학교급식과 연계한 로컬푸드 정책 아이디어 제공에 관한 사항
4. 민간차원의 소비촉진운동 전개와 관련한 사항
5. 그 밖에 로컬푸드 정책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4 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협의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도 농수산국장, 경상북도 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된다.

③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2. 생산자단체·소비자단체·로컬푸드 관련 유통분야 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대표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관련 대학 및 연구소 종사자
4. 그 밖에 로컬푸드 및 식품산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④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5 조(협의회 회의 등) ①협의회는 매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6 조(간사) ①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 7 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8 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 9 조(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도지사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은 폐지한다.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경상북도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5조, 제7조에 따라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운영에 따른 예산추계

2. 비용추계의 전제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위원 20명에 대한 연간 협의회 회의 참석 시 수당 등 실비에 대한 변상 및 일반운영비
- 연간 협의회 회의 3회 정도 개최(「경상북도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지급)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세입			해당	없음			
	소계(a)						
	세출						
	협의회 운영	14,000	14,000	14,000	14,000	14,000	70,000
	□ 총 비용(a-b)	-14,000	-14,000	-14,000	-14,000	-14,000	-70,000

※ 연간 3회 협의회 회의 개최 및 회의 시 필요한 일반운영비 반영

4. 재원조달 방안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국 비							
도 비	일반회계	14,000	14,000	14,000	14,000	14,000	70,000
	특별회계						
	기 금						
시군비							0
민 간							0
기 타							
합 계		14,000	14,000	14,000	14,000	14,000	70,000

5. 부대의견

- 조례 제정으로 협의회 참석 위원에 대한 실비변상 및 일반운영비 외에 추가적인 예산부담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6. 작성자 : 식품유통과 지방농업 7급 제갈승(950-2957)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소요액				산출근거
	계	도비	시군비	민간	
합 계	14,000	14,000	0	0	
협의회 운영	14,000	14,000			* 실비변상 20명×150천원×3회=9,000천원 * 회의 운영 일반운영비 5,000천원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2년 10월 18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 2(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기준 면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6호나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해제 기준 면적은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용도지구의 신설) 법 제37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p> <p>1. 문화지구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역사문화자원의 관리·보호와 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u><신설></u></p>	<p>제8조(용도지구의 신설) ----- ----- -----.</p> <p>1.(현행과 같음)</p> <p><u>제8조의 2(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 대지의 해제기준 면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6호나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중 개발제한구역인 부분의 해제 기준 면적은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u></p>

경상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2년 10월 18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녹색제품의 구매 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3.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교육감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 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제 3 조(적용범위) 경상북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하여는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 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 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지역교육청
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38조제41조, 제45조, 제55조, 제60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로서 공립학교에 한정

제 5 조(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①교육감은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②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6 조(구매이행계획)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은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이행계획을 수립·공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계획 금액
2. 그 밖에 교육감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2항에 따른 구매이행의 공표는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 한다.

⑤교육감이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체 및 관계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 7 조(구매실적)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집계·공표하는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
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구매실적 공표방법은 제6조제4항에 따른다.

제 8 조(구매의무) 법 제6조에 따라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시설 등의 유지보수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납품하는 제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납품하는 제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 9 조(구매예외) ①법 제6조제5호에 따라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교육감이 판단하는 경우

②제1항의 각 호 또는 법 제6조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 10 조(녹색제품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 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에 따른 환경성적 표지 인증제품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 효율관리
기자재

4. 그 밖에 녹색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품목별 판단 기준에 적합한 상품

제11조(녹색제품의 구매증대) 교육감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증대하기 위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3. 1. 1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연월일 : 2012년 10월 10일

제 출 자 : 교 육 위 원 장

1. 수정이유

법령과 어긋나는 조례안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신설함.

2. 주요골자

경상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안 “제4조제4호”를 삭제하고

안 “제11조”를 “제12조”로 하며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녹색제품의 구매증대) 교육감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증대하기 위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3. 참고사항 : 없음

**경상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4호”를 삭제하고

안 “제11조”를 “제12조”로 하며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녹색제품의 구매증대) 교육감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증대하기 위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녹색제품의 구매 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3.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교육감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 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p>제 3 조(적용범위) 경상북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하여는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 4 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p>제 1 조(목적) (제정안과 같음)</p> <p>제 2 조(정의) (제정안과 같음)</p> <p>제 3 조(적용범위) (제정안과 같음)</p> <p>제 4 조(적용대상) (제정안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정안과 같음)

제 정 안	수 정 안
<p>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지역교육청</p> <p>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38조, 제41조, 제45조, 제55조, 제60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로서 공립학교에 한정</p> <p>4.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으로부터 재정보조를 받는 제3호의 각급 학교</p> <p>제 5 조(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p> <p>①교육감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p> <p>②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p>제 6 조(구매이행계획)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은 매 회계 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공표하여야 한다.</p> <p>②교육감은 이행계획을 수립·공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2. (제정안과 같음)</p> <p>3. (제정안과 같음)</p> <p>4. 삭제</p> <p>제 5 조(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제정안과 같음)</p> <p>제 6 조(구매이행계획) (제정안과 같음)</p>

제 정 안	수 정 안
<p>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계획 금액</p> <p>2. 그 밖에 교육감이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④제2항에 따른 구매이행의 공표는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p> <p>⑤교육감이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체 및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계획 금액</p> <p>2. 그 밖에 교육감이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④제2항에 따른 구매이행의 공표는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p> <p>⑤교육감이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체 및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 7 조(구매실적)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집계·공표하는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녹색제품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p> <p>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 실적</p> <p>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②제1항에 따른 구매실적 공표방법은 제6조제4항에 따른다.</p>	<p>제 7 조(구매실적) (제정안과 같음)</p>

제 정 안	수 정 안
<p>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계획 금액</p> <p>2. 그 밖에 교육감이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④제2항에 따른 구매이행의 공표는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p> <p>⑤교육감이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체 및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계획 금액</p> <p>2. 그 밖에 교육감이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④제2항에 따른 구매이행의 공표는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한다.</p> <p>⑤교육감이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체 및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p> <p>제 7 조(구매실적)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집계·공표하는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녹색제품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p> <p>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 실적</p> <p>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②제1항에 따른 구매실적 공표방법은 제6조제4항에 따른다.</p>	<p>제 7 조(구매실적) (제정안과 같음)</p>

제 정 안	수 정 안
<p>제 8 조(구매의무) 법 제6조에 따라 녹색 제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시설 등의 유지보수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납품하는 제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납품하는 제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p>제 9 조(구매 예외) ①법 제6조제5호에 따라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3.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교육감이 판단하는 경우 <p>②제1항의 각 호 또는 법 제6조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p>	<p>제 8 조(구매의무) (제정안과 같음)</p> <p>제 9 조(구매예외) (제정안과 같음)</p>

제 정 안	수 정 안
<p>제10조(녹색제품의 범위) 법 제11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 효율관리 기자재 4. 그 밖에 녹색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판단 기준에 적합한 상품 <p>〈신설〉</p> <p>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2013. 1. 1부터 시행한다.</p>	<p>제10조(녹색제품의 범위) (제정안과 같음)</p> <p>제11조(녹색제품의 구매증대) 교육감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증대하기 위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신설〉</p> <p>제12조(시행규칙) (제정안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정안과 같음)</p>

경상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경상북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는 제정 조례안으로 조례에서 규정하는 녹색제품 의무구매에 따른 비용추계는 「경상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제2호에 따라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우므로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
- 녹색제품 의무구매에 따른 비용추계는 설계 시 마다 해당 제품군 유무를 파악하고 비용을 추계해야 하므로 시행 이전에는 비용추계를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송 필 각

2012년 10월 18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중 올바른 생활태도를 가지고
학습활동에 충실하나 학비부담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과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특별장학생의 요건) 이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하 “특별장학생”이라 한다)은 학비부담이 어려운
고등학교 재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학교생활에 충실하며 학습 활동에 모범을 보인 학생
2. 자연과학, 예능, 체육 등에 특수한 재능이 있다고 인정
되는 학생

3. 선행, 효행, 봉사활동 등 교내·외 생활에서 모범을 보인 학생

제 3 조(특별장학생의 정수) ①특별장학생의 정수는 고등학교 학생 수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다.

②학교별 신규 선정 인원은 매 학년도 해당 학교 신입생 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정한다.

1. 신입생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신입생수의 100분의 1로 하고 나머지 학생 수가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 배정할 수 있다.
2. 신입생 수가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을 배정한다.
3. 신입생 수가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격년으로 1명을 배정할 수 있다.

제 4 조(특별장학생의 선정) ①고등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제10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특별장학생 후보자를 교육감에게 추천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후보자 중에서 제9조의 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 학년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특별장학생을 선정한다.

제 5 조(장학금 지급) ①특별장학생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를 면제한다.

②특별장학생에게는 교과서, 학용품, 교복 등의 구입비를 포함하는 간접적인 교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6 조(지급기간 등) ①특별장학생에게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지급한다.

②제5조제2항의 장학금은 매 학기 초에 특별장학생에게 지급한다.

제 7 조(지급중지) ①특별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퇴학하거나 1년 이상 휴학한 경우
2.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다른 장학금을 받게 된 경우
4. 그 밖에 제2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②특별장학생의 소속 학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조(소요재원) 특별장학생에게 지급할 장학금은 매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제 9 조(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 ①고등학교의 특별장학생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에 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정책국장, 행정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조정담당관과 교육정책국의 과장, 그리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2명 이내로 한다. 단, 외부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심사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⑧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학교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 ①공정하고 투명한 장학생 선발을 위하여 고등학교에 학교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이하 “학교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학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학교장이 추천하는 외부위원 2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학교장은 제3조에 따라 학교에 배정된 특별장학생 인원수를 초과하도록 복수 추천을 하고, 학교심사위원회는 배정된 인원내에 대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④학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하여 공개 심의 후 학교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제2항 외부위원의 자격 및 학교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9조제3항에서 제8항까지 준용하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11조(장학생 명부 작성·비치) 학교장은 대상학생의 이중 수혜를 배제하기 위하여 특별장학생 및 각종 외부장학생 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장학금 지도·감독) 교육감은 장학금 지급 현황에 대하여 정기적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특별장학생의 관리, 장학금의 지급 등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중학교 특별장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발된 중학교 특별장학생은 제6조에 따라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지급한다.

■ 결 의 안

- 경북·대구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경북·대구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 주 문

- 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경북·대구 상생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나. 특별위원회 위원은 7명 이내로 하며, 각 상임위원회 1명씩으로 구성한다.
- 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4년 6월 30일 까지로 한다.
- 라. 특별위원회 보좌 전문위원은 기획경제 전문위원으로 한다.

2. 제안이유

- 가. 경상북도의회와 대구광역시의회 간 지역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체결과 관련하여 지역현안을 상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지역발전 상생협의회 구성이 필요함.
- 나. 국책사업 유치 및 공동추진, 공동협력 사업발굴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미래 지향적인 발전방향 모색과 공동방안강구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소통의 장 마련과 상호의견 교환이 필요함.
- 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실천 방안

마련과 각종 프로젝트 추진 및 정책개발 등을 위한 제반 활동을 하고자 함.

3. 관계법령

- 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 나. 경상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8조

관 련 법 규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 ①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 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 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 ③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56조(특별위원회의 설치)

- ①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특별위원회)

- ①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 ③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 ④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 ①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 ②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 주 문

- 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나. 특별위원회 위원은 9명 이내로 구성한다.
- 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4년 6월 30일 까지로 한다.
- 라. 특별위원회 보좌 전문위원은 기획경제 전문위원으로 한다.

2. 제안이유

- 가. 지방분권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지방자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 나.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1년이 지났건만 권한 없는 자치, 무늬만 지방자치인 상황에서 권한과 돈은 여전히 중앙으로 집중되어 지방정부는 조금이라도 국가지원을 더

받으려고 중앙정부의 눈치를 살피며 매달리는 현실 속에 지방자치는 요원한 것이 되어버렸다.

다. 그러나 이제 지방분권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고 패러다임이 되었다. 국가와 국가 간, 도시와 도시간의 경쟁이 치열해 질수록 지방의 경쟁력 없이는 국가의 경쟁력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고 보면 지방의 균형 발전을 통한 국가 전체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지방분권은 시급히 이루어져야할 국가적인 과제이다.

라. 이에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 경상북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전문가 등과 뜻을 모아

- 지방재정확충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한 국세의 지방세 전환
-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강화
- 중앙에 집중된 권한의 지방이양

등의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지방분권특위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3.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나. 경상북도 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8조

관 련 법 규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 ①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 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 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 ③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56조(특별위원회의 설치)

- ①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특별위원회)

- ①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 ③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 ④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 ①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 ②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의정활동보고서

(제257회 임시회·제258회 임시회)



2012. 10 인쇄 / 2012. 10 발행

발행 / 경상북도의회

편집 / 의사담당관실

전화 : 602-5284

FAX : 602-5140



<비매품>